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개선 효과

중복 신고의 대폭 축소... 연간 1,000억원 이상 절감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dkim@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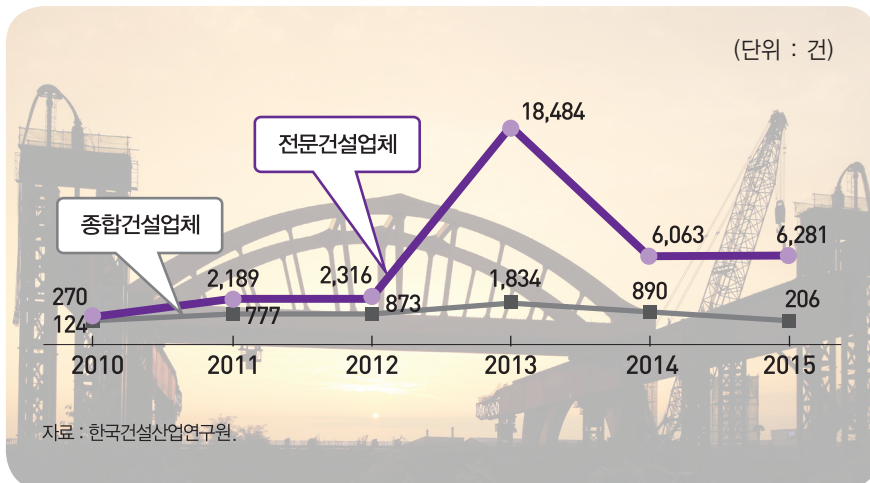
2003년 이래, 건설업계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대표적 행정 규제로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를 제기하여 왔다. 특히,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를 도입하면서 신규 및 변경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고,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에 따라 행정제재를 받는 건설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3,345건과 시정명령 3만 3,459건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전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의 55.2%, 시정명령 건의 79.2%에 달하는 규모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월, 『건설공사 정보관리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집중 제기하였다. 이 보고서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일본의 건설공사 정보관리 현황 조사

및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제도 개선을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건설분야 행정규제개혁TFT에 참여해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로 연간 1,600억원의 규제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중복적이고 과도한 신고 항목들로 인하여 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집중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 및 대정부 활동에 힘입어 정부의 '제6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건설공사대장 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토록 하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제재의 양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전에 신고 의무를 공지하기로 하였다. 특히, 준공 후 미신고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문제를 준공 전 신고 의무를 공지해 막기로 하였다. **END**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관련 시정명령 건수



<개선 효과>

연간 규제 비용
약 1,000억원 이상
절감 예상